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7896
------	-------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제9734호	최기상의원	2025.4.11.	○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6.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15325호	한병도의원	2025.12.17.	○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2.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16459호	이기현의원	2026.1.30.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6.3.6.)

나.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23.)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6. 3. 24.)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대국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자 함.

또한, 장애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를 임의절차에서 의무절차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 ①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하고,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예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 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

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
도록 하거나 그 의견을 청취하
여야 한다.